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친환경 청정사업의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잠실수중보 상류의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20. 2. 27.] [법률 제16615호, 2019. 11. 26., 일부개정]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환경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통보 대상 등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모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“관리청에”를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리청”을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관리청에”를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)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(이하 “친환경 청정사업”이라 한다)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<u>관리청</u> 에 통보하여야 한다.	제10조의2(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에게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<u>관리청</u> 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 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위원회는 법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, 심의결과를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관할하는 <u>관리청</u>에 통보하여야 한다. ⑤ · ⑥ (생 략)	----- <u>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</u> <u>· 군수 · 구청장에게</u> ----- -----.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--	--